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2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36126 부당이득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19. 2. 15.

판 결 선 고 2019.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03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2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51%를 취득하고 2007. 6. 19.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 2. 위 주식을 처분하면서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다.

나.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0. 9.경 실시된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이 2007. 6. 19. 부동산임의경매로 [redacted]구 D건물 E호 외 286건의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자, 2010. 11. 초경 C에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추징액 합계 415,824,660원을 부과하였고, 그 납부고지서는 2010. 11. 15. C에 송달되었다(세무조사 결과통지일인 2010. 10. 1. 기준으로 원세 267,406,350원, 가산세 147,842,710원, 합계 415,249,060원임,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징수권을 이관 받은 피고는 C의 부동산 공매대금에서 배분받은 금액(배분일: 2015. 9. 18.)을 이 사건 취득세 등에 충당하고도 604,990,500원이 부족하자, 2015. 9. 21.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의무 성립일(취득일: 2007. 6. 19. 또는 등기일: 2007. 7. 5.)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에게 위 부족액의 51%에 해당하는 308,545,080원(지방세액: 159,039,240원, 가산금: 149,505,84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30. 그 중 지방세액 159,039,2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호증, 을 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24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30. 납부받은 159,039,2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시인 2010년(과세연도)에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고, 2007. 6. 7.부터 2009. 1. 2.까지 C의 주식 51%를 보유한 것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을 뿐 실질 경영에 참여하거나 그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C이 2010.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액 약 123억 원의 이익을 취할 당시의 과점주주에게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체납처분을 취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약 5년 8개월이 경과한 2015년 9월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송달받은 납부통지서에는 과세대상, 구체적인 세액산출근거, 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604,990,500원의 납부를 독촉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

3.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24

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기준으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래 가., 나., 다. 기재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나아가 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24

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와 동시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성립시기에 각 성립하므로[구 지방세법(법률 제8423호) 제29조 제1항, 제260조의3 제1항, 구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8139호) 제5조, 제7조] C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7. 6. 19. 또는 등기일인 2007. 7. 5.이고, 당시 원고가 C의 주식 51%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C의 형식적 주주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문제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로 돌릴 정도의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며,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참조),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C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2010. 11. 30.(변경납기: 2011. 3.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9. 21.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24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때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때의 과점주주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특히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과점주주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3293호)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6조 등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써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붙임서류로 표기되어 있던 산출내역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총 체납액인 604,990,500원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대상 물건이 무엇인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근거법률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기본법 또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이 혼용되어 기재되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갑 1호증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과세연도, 세목, 과세번호,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방세액과 가산금의 내역 및 지분율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사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24

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을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액산출 근거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당사자들도 세액산출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세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하며 만일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금 등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한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통지가 2010. 11. 15.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선행 요건을 갖춘 것이고, C이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그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2015. 9. 21.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송달의 적법 여부를 문제삼는 수령인 F에 대한 독촉고지서 송달은 이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의 확정 또는 징수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액에 관한 납세의무까지 무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24

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연